

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- 지방제정법시행령의 개정(제156조)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담당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코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회계관직을 아래와같이 명정
 -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
 -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

3. 참고사항

- 시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생략
(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5호)

속초시 조례 호

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, 제4조, 제5조 제1항, 제3항, 제6조 제1항, 제2항, 제7조 제1항중 "기금출납
명령관을" "기금운용관"으로, "기금출납공무원"을 "기금출납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제3조 (회계공무원의 임명)		제4조 (회계공무원의 임명)	
	① 의로보호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 에 의한 <u>기금출납명령관</u> 은 사회과장 <u>기금출납공무원</u> 은 시의 의료보장계장 으로 한다 .	① ----- ----- <u>기금운용관</u> ----- <u>기금출납원</u> ----- -----		
	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	제4조 (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)	제4조 (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)		
	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,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<u>기금출납명령관</u> 에게 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<u>기금출납공무원</u> 에게 이를 준용한다 .	----- ----- ----- <u>기금운용관</u> ----- ----- <u>기금출납원</u> -----		
	제5조(수입) ① <u>기금출납명령관</u> 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	5조(수입) ① <u>기금운용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		
	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	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 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<u>기금출납명령관</u> 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.	③ ----- ----- <u>기금운용관</u> ----- -----		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지출)①	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	6조(지출)①	기금운용관	
	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			
	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			
	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영세서를 검토			
	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			
	결정.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비 기재			
	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			
	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,			
	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	기금운용관		
	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			
②	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	②		
	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			기금출납
	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	원		
	명령을 발하여야 한다.			
제7조(대불금의 상환등)①	기금출납명	제7조(대불금의 상환등)①	기금운용	
	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	관		
	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한 날부터			
	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			
	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			
	수 있다. 이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			
	한다.			
1.	10만원 미만은 3회	1.		
2.	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	2.		
3.	30만원 이상은 12회	3.		
②(성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③(성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